

한·아세안 FTA에서 한국 기업 거래상대방의 수입통관 분쟁 사례분석과 대응방안 연구*

Case Studies on Import Clearance Disputes Facing
Korean Companies' Trade Counterparts under
Korea · ASEAN FTA and Countermeasures

배 은 주** Eun-Ju Bae
박 세 운*** Sae-Woon Park
김 희 호**** Hee-Ho Kim

| 목 차 |

I. 서론	IV. 대응방안
II. 한·아세안 FTA 수출입 활용 현황	V. 결 론
III. 거래상대방 수입통관 분쟁 사례분석	참고문헌
	Abstract

국문초록

2007년 6월 한·아세안 FTA 발효 이후 아세안 국가는 우리나라와 교역이 급증하여 제2의 수출대상국으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 기업의 한·아세안 FTA의 수출활용률은 46%로

* 이 논문은 배은주의 경북대 대학원 FTA통상학과 2017학년도 2학기 석사학위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 대구본부세관 관세행정관, 제1저자

*** 창원대 경영학과 교수, 교신저자

****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공동저자

전체 FTA의 평균 수출활용률 72%보다 훨씬 낮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수출기업과 거래하는 아세안 국가의 거래상대방이 겪는 수입통관 분쟁 사례를 유형별로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한·아세안 FTA 수출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아세안 국가는 원산지증명서의 형식적 요건을 중요시하므로 원산지증명서의 정확한 작성과 아세안 각국의 제도와 규정처리 절차에 대한 사전이해 및 정확한 품목분류번호 획득, 우리나라 정부당국의 거래상대방 수입통관 분쟁을 해소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과 상대국 세관과의 긴밀한 접촉을 통한 상호 소통 강화를 대응 방안으로 제안한다.

〈주제어〉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FTA 활용, 수입통관 분쟁

I. 서론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수출시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대외 개방을 통한 경제시스템의 선진화를 위해서 동시다발적으로 FTA협정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4년 4월 칠레를 필두로, 2018년 1월 현재 싱가포르, EFTA, ASEAN, 인도, EU, 페루, 미국, 터키, 호주, 캐나다, 중국, 뉴질랜드, 베트남, 콜롬비아 등 52개국과 15개의 FTA를 체결하였다.

한·아세안 FTA는 2007년 6월 1일에 체결된 것으로, 우리나라의 거대경제권과의 최초의 FTA이다. 한·아세안 FTA는 아세안 회원국과 각각 개별적인 FTA를 추진하였던 일본에 비해 아세안 전체와의 FTA 협상을 통해 우리나라가 아세안 시장 접근에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중국보다 3년 늦게 협상을 시작하였음에도 ‘2010년’까지 일반 품목군 제품에 대한 관세철폐에 합의함으로써 아세안 국가와의 무역자유화가 빠르게 진행되었다.

동남아 10개국¹⁾으로 구성된 아세안은 FTA 발효 이후 10년 동안 우리나라의 제5위 교역시장에서 제2위의 교역시장으로 급부상하여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주요한 동력이 되었다. 하지만, 한·아세안의 무역규모 확대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기업이 아세안 각국으로 수출하는 전체 수출 가운데 FTA를 활용한 수출활용률은 46%로 우리나라가 맺은 전체 13개 FTA협정²⁾의 평균 수출활용률인 72%을 크게 밑돌고 있다(김정덕·곽동철, 2017). 수입국의 관세, 통관절차, 품목분류 및 원산지 등의 문제로 발생한 수입통관 분쟁

1)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2) 15개 협정 중 한·싱가포르 FTA 및 한·베트남 FTA는 한·아세안 FTA에 포함됨.

건수는 전체 FTA협정 가운데 아세안 국가가 상당히 많다.

특히 우리나라 수출자의 거래상대방인 수입자의 수입통관 분쟁은 보관료, 통관수수료 및 관세 등 수입자의 비용을 증가시켜 우리나라 수출자의 경쟁력과 FTA 활용 의지를 약화시킨다. Abreu(2013)는 원산지규정과 관련된 지연과 행정비용이 FTA를 활용하지 않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³⁾ Hayakawa et al. (2014)의 한·아세안 FTA의 활용 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에서는 건당 무역거래금액이 크면 클수록 FTA를 더 많이 활용하고, 원산지규정의 엄격성은 FTA 활용을 저해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FTA 활용 결정 요인에 대한 선행 연구로는 Bureau et al. (2006), Francois et al. (2006) 및 Kerk and Lendle (2012) 등이 있으나, 우리나라 기업의 거래상대방인 수입자의 수입통관 분쟁 개선을 통한 FTA의 수출활용도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는 거의 찾을 수 없다. 정인교(2009), 정인교 외(2010), 도연정·배정한(2012), 정재승·정운세(2013), 남풍우·최준호(2007), 한상현(2016), 조찬혁·남수정(2017) 등의 선행연구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주요 FTA 체결국에 대한 FTA 기업지원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분석을 하거나, 소규모 기업의 한·아세안 FTA 활용성공 사례를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선행연구는 아세안 국가 수입자의 수입통관 분쟁 요인으로 인하여 FTA의 수출 활용이 저조한 원인을 도출하지 못하였으며, 주로 원산지결정기준 및 원산지증명서 작성 문제에 국한되어 있다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관세청에 신고·접수된 FTA 수입통관 분쟁 사례를 유형별로 분석하여 한·아세안 FTA 수출 활용 애로 요인을 도출하고, 이를 근거로 한·아세안 FTA 수출활용을 높이기 위한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한·아세안 FTA 수출입 활용 현황

우리나라는 적극적으로 다수 국가와의 FTA를 체결하여 외형적으로 2018년 1월말 기준 15건의 FTA 발효로 단기간에 52개국 국가와 성공적인 FTA를 구축하였고, 내용적으로도 대부분 FTA에서 90% 이상의 높은 자유화 즉 관세 철폐를 달성하였다. 그러나 FTA 추진 못지않게 이미 체결한 FTA의 수출활용기반 확대가 중요하다. FTA 수출활용률은 발효된 FTA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용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척도로서 기업이 실제로 FTA 효

3) FTA를 활용하지 않는 요인으로는 FTA에 대한 정보 부족이 35%, 특혜관세 혜택이 크지 않다는 점이 17%, 원산지규정과 관련된 지연 및 행정비용이 15%, 수출자유지역과 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와 같은 다른 특혜제도 이용이 8%, 상대국의 비관세장벽이 6%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Abreu, 2013, p.19.).

과를 얼마나 누리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이다. 여기에서의 FTA 활용률⁴⁾은 FTA 상대국으로 수출·입하는 특혜대상품목에 대해 우리나라 기업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아 특혜관세 혜택을 얼마나 적용받았는지를 백분율로 환산하여 계산된다.⁵⁾ <표 1>은 FTA협정별 수출입 활용률을 나타내고 있다.

<표 1> FTA 별 수출입 활용률

(단위 : %)

협정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칠레 (2004.4)	수출	96.4	97.1	-	85.5	-	75.4	78.9	80.5	80.7	78.6
	수입	83.3	80.0	82.4	94.3	95.8	97.9	98.5	98.3	98.8	99.3
EFTA (2006.9)	수출	-	-	-	-	-	84.9	80.3	79.6	80.4	80.4
	수입	38.7	40.7	39.7	43.6	55.7	61.9	41.8	41.6	43.7	56.8
아세안 (2007.6)	수출	1.3	3.5	13.8	29.0	33.1	34.8	36.4	37.0	42.5	46.0
	수입	8.8	63.1	53.0	68.1	73.8	72.5	74.1	73.8	75.4	78.3
인도 (2010.1)	수출				17.7	35.8	36.5	43.2	56.3	62.4	65.8
	수입				45.8	53.6	53.9	61.4	67.0	73.1	56.0
EU (2011.7)	수출					65.7	84.0	85.6	85.3	85.3	84.8
	수입					47.1	67.6	68.6	66.8	71.0	72.1
페루 (2011.8)	수출					60.7	77.8	91.9	90.5	83.6	83.4
	수입					53.2	92.0	97.9	89.2	90.6	77.5
미국 (2012.3)	수출						69.4	77.0	76.2	79.1	75.6
	수입						63.7	68.3	66.0	67.5	70.7
터키 (2013.5)	수출							69.4	72.7	79.1	80.4
	수입							69.4	64.4	69.1	65.9
호주 (2014.12)	수출									69.7	77.4
	수입									63.5	79.2
캐나다 (2015.1)	수출									79.9	89.1
	수입									61.2	75.1
중국 (2015.12)	수출									8.2	33.9
	수입									11.2	57.9
뉴질랜드 (2015.12)	수출									5.8	31.8
	수입									43.7	87.3
콜롬비아 (2016.7)	수출										17.4
	수입										66.4
전체	수출						61.9	67.3	69.0	71.9	72.2
	수입						65.4	69.3	68.0	70.2	73.1

자료 : 관세청 (2016), 싱가포르 및 베트남 협정은 아세안 협정에 포함
()은 FTA 발효일을 표시함.

$$4) \text{ FTA 활용률} = \frac{\text{실제로 특혜관세를 적용받은 수출(수입)액}}{\text{특혜관세 대상품목의 수출(수입)액}} \times 100$$

5) 어떤 연구자는 FTA 활용률을 총수출입금액 대비 특혜관세를 적용받은 수출입금액의 비중으로 정의하고 있다 (Hayakawa, Kim and Lee, 2014, p.501).

아세안과의 교역이 확대되고 있지만, <표 1>에서 보듯이 한·아세안 FTA 수출활용률은 우리나라가 체결한 다른 FTA 협정과 비교하여 낮은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다. 한·아세안 FTA의 2016년 수입활용률은 78%로 전체 FTA 협정 평균 활용률 73%를 웃돌고 있으나, 수출활용률은 46%로 전체 FTA 협정 평균 72% 보다 크게 낮다. FTA 수입활용률이 높은 것은 우리나라 세관의 FTA 수입통관 절차가 투명하고 효율성이 높은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FTA 수출활용률이 낮은 것은 아세안 국가 세관의 수입통관 절차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낮은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⁶⁾ 한·아세안 FTA의 수출활용률은 협정체결 직후인 2007년 1.5%에서 2010년 29%으로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그 이후 수출활용률은 평균 42%로 크게 증가하지 못하고 있다.

<표 2>는 한·아세안 FTA 개정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상품협정문 1차 개정(2011년), 상품협정문 2차 개정(2012년), 원산지증명 운영절차 개정(2014년), 품목별 원산지 기준 개정(2015년), 상품협정문 3차 개정(2016년) 등 여러 차례 협정 개정을 통해 자유화의 수준과 수입통관 절차의 투명성을 높였다. 한·아세안 FTA의 관세철폐 비중 즉 자율화율(혹은 개방화율)은 우리나라는 FTA 체결 시 총 4,742개 품목(수입액 기준 91.55%)을 일반품목군으로 개방하였고, 아세안 각국도 90% 개방하여 세계무역기구(WTO)에서 ‘높은 수준’의 FTA로 보는 개방화율 90%와 비교해 보아도 한·아세안 FTA의 자유화가 결코 낮은 수준은 아니다.

<표 2> 한·아세안 FTA 개정 현황

발효(시행)	구분	주요내용
2010년 1월	상품협정 1차 개정 의정서	라오스 초민감품목 상품협정 통합
2012년 6월	상품협정 2차 개정 의정서	관세, 품목분류 등 변경의 통보 명확화 이행위원회에 원산지 인증 관련 개정 권한 부여
2014년 1월	원산지 증명 운영절차 개정	원산지증명서 서식개정 및 유효기간 연장 선적 전 발급 원산지증명서 인정
2015년 5월	품목별 원산지 기준 개정	HS 2007에서 HS 2012로 품목분류 조정
2016년 1월	상품협정 3차 개정 의정서	무역원활화 규정 도입(전자발급 원산지증명서 인정 명 문화 등) 상호주의 제도 개선

자료 : 한·아세안 FTA협정문을 기초로 저자 작성

6) 가격조건이 DDP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자가 수입통관을 한다(박세운·한기문·김성룡, 2017, p.223).

Ⅲ. 거래 상대방 수입통관 분쟁 사례분석

1. 한·아세안 FTA 거래 상대방 수입통관 분쟁 현황

FTA 수출활용 애로는 우리나라 기업이 FTA 체결국에 수출한 품목이 상대국의 관세법 등에 따라 수입 통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의미한다. 상대국가는 FTA로 수입관세율이 낮아지면서 수입관세 수입의 급격한 감소를 막거나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방편으로 FTA 특혜 적용을 까다롭게 하고 있다.⁷⁾ FTA가 체결되었으나 특혜관세의 혜택을 받기 위한 비용이 너무 높으면 FTA의 경제적 효과는 사라진다. 전 세계의 2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FTA 일치성 비용 (compliance cost)는 제품가격의 2-15%에 달하고 있다.⁸⁾ 거래상대방의 수입통관 분쟁 발생은 FTA의 일치성 비용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표 3〉 유형별 FTA 거래 상대방 수입통관 분쟁 현황

(건수,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원산지증명서 불인정	55	37.7	66	41.5	105	59.3
협정규정 해석 상이	15	10.3	6	3.8	18	10.2
규정절차 시스템	3	2.0	12	7.5	17	9.6
질의성 민원	62	42.4	56	35.2	14	7.9
품목분류번호 상이	2	1.4	9	5.7	12	6.8
제도관습 상이	-	-	6	3.8	4	2.3
기 타	9	6.2	4	2.5	7	3.9
합 계	146	100	159	100	177	100

자료 : 관세청 통관애로 접수 통계

〈표 3〉과 〈그림 1〉은 한·아세안 FTA의 수입통관 분쟁 건수와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이 아세안 국가로 수출한 물품이 상대국의 수입통관과정에서 발생한 수입통관 분쟁 건수는 매년 증가하여, 2011년 70건에서 2012년 131건, 2014년 146건,

7) 많은 개발도상국에서는 수입관세 수입이 여전히 정부 세입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개발도상국의 취약한 산업구조로 인하여 개발도상국 당국은 특혜관세로 수입되는 물품의 급증에 대하여 상당히 민감하다(Inama, 2009, p.531)

8) von de Heetkamp and Tuseveld (2011)과 Cadot et al. (2002)의 연구에 의하면 멕시코의 수출의 원산지 증명서 일치성 비용은 제품가격의 1.94%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높은 compliance cost는 행정규제가 심한 국가 간의 FTA에서 발견되고 있다(Herin, 1986).

2015년 159건, 2016년 177건이 되었다.

이 통계는 관세청에 접수되어 집계된 수치이므로 신고 되지 않은 것까지 고려한다면 실제 발생한 수입통관 분쟁 건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에 접수된 분쟁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FTA 이행 초기에는 규정에 대한 질의성 민원이 많았으나,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FTA 특혜 원산지증명서 불인정 사례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되고 있다. 또한 FTA 협정 해석 상이와 같이 상대국과의 문화적 차이나 수입통관제도를 이해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수입통관 분쟁 도 상당수 있다. 이와 같은 수입통관 분쟁 발생은 거래 상대방인 수입자의 비용을 가중시키는데, 이 비용을 최종적으로 수출자가 부담하지 않으면 앞으로의 거래 관계를 유지하기 힘들어진다.

역사적으로 보면 원산지증명서의 정확성은 수출자에게 책임이 있다. 왜냐하면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 발행을 신청하고, 관련 서류를 제시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원산지증명서와 관련하여 수입국 세관이 수출자에게 직접 수입관세를 추징하거나, 벌금을 부과할 수 없으므로 수입자에게도 책임 부담이 있다(von de Heetkamp and Tuseveld ,2011, p.125).

〈표 4〉는 우리나라 FTA 별 수입통관 분쟁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EU, 미국, 인도 및 중국 등과의 FTA에서는 발효 초기에 상대국에서 수입통관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였으나, 기간이 경과 될수록 점차 건수와 비중이 줄어들었다. 그러나 아세안은 전체 수입통관 분쟁 사례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며 FTA 발효 후 10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 69건, 39%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2014년-2016년 중 관세청 통관애로 접수 통계로 아세안 각국별 통관분쟁 발생 비중을 계산하면 아세안 국가 중 베트남(36%), 태국(24%), 인도네시아(21%), 말레이시아(6%)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표 4〉 FTA 별 거래 상대방 수입통관 분쟁 현황

(건, %)

협정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건수	비중	건수	비중	건수	비중	건수	비중	건수	비중	건수	비중
칠레	1	1.4	-	-	1	0.7	-	-	1	0.6	-	-
EFTA	-	-	2	1.5	-	-	1	0.7	2	1.2	-	-
아세안	29	41.4	27	20.6	53	36.1	68	46.6	71	44.6	69	39.1
인도	6	8.6	12	9.2	21	14.3	31	21.2	20	12.6	9	5.0
페루	-	-	1	0.8	-	-	-	-	7	4.4	-	-
EU	31	44.3	26	19.8	35	23.8	30	20.5	24	15.1	10	5.6
미국	1	1.4	60	45.8	24	16.3	13	8.9	16	10.1	4	2.3
호주	-	-	-	-	-	-	2	1.4	2	1.3	-	-
중국	-	-	-	-	-	-	-	-	-	-	80	45.2
기타	2	2.9	3	2.3	13	8.8	1	0.7	16	10.1	5	2.8
합 계	70	100	131	100	147	100	146	100	159	100	177	100

자료 : 관세청 통관애로 접수 통계, 싱가포르 및 베트남협정은 아세안협정에 포함

2. 한·아세안 FTA의 수입통관 분쟁 유형별 사례

우리나라 기업이 아세안 각국으로 수출한 물품이 거래상대방에게 수입통관 분쟁이 발생하여 수출자가 관세청에 신고한 후, 관세청이 상대국 세관에 이의를 제기하여 최종적으로 특혜 인정을 받은 해외 수입통관 분쟁 사례(2011년~2015년)를 5가지 주요 유형별로 구분하여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1) 원산지증명서 형식적 요건 관련 사례⁹⁾

첫 번째 사례는 다음과 같다.

인도네시아에 의류기기를 수출하면서 한국의 세관이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였으나, FTA 협정을 잘 이해하지 못한 인도네시아 세관이 한국은 상공회의소만 발급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한국의 세관은 발급권자가 아니라며 특혜 적용을 거부하였다.

두 번째 사례는 다음과 같다.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의 10번 Number and date of Invoices 란은 다른 란과 다르게 제품별로 란이 구별되지 않는다. 한국 E사는 송장 번호가 일곱 자리인데, 처음 원산지증명서 신청서 작성할 때에는 10번 란에 총 9건의 송장 중 송장 번호 2개(총 14 자리)만 한 칸에 적었다. 그러나 나중에 원산지증명서 신청서를 수정하여 10번 란에 대표 송장 번호 1개만 기재하고, 7번 수출물품의 DESCRIPTION 란에 모든 송장 번호를 입력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았는데, 태국 세관은 해당 원산지증명서를 인정할 수 없다며 특혜 인정을 거부하였다.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상 부득이한 상황임에도 태국 세관이 지나친 형식주의를 주장한 부당한 사례이다.

세 번째 사례는 다음과 같다.

베트남에 수출하면서 한국의 세관에서 발급한 전자문서를 수입자에게 제공하였는데, 베트남세관이 자필 서명된 서류원본만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전자서명의 신뢰성을 문제 삼아 특혜적용을 거부하였다.

네 번째 사례는 다음과 같다.

태국 방콕세관은 인장이 직접 날인되고 자필 서명된 원산지증명서를 요구하면서, 전자발급된 한국의 원산지증명서를 프린트로 인쇄한 것은 가짜라며 적용을 거부하여, 우리 기업이 진본임을 증명하자 한·아세안 FTA 원산지기준의 작성방식을 문제 삼고 특혜적용을 거부하였다.

9) 관세청(2012, p.80,pp.86-87, p.89), 관세청(2014, p.97, p.106), 관세청(2015, p.25,p.36,p.47)

다섯 번째 사례는 다음과 같다.

제3국 송장 발행 원산지증명서 발급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발급받아 제출한 원산지증명서에 대해 태국세관이 제3국 송장 발행자 주소 미기재를 이유로 특혜적용을 거부하였다. 원산지증명서 서식 작성 요령에 의하면 제3국 송장 발행자의 주소는 기재할 필요가 없다.

여섯 번째 사례는 다음과 같다.

선적일로부터 2일 후에 소급 발급하였는데, 태국 세관에서 협정문 부록1의 제7조 제4항에서 규정한 문구인 "Issued Retroactively"를 기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협정적용을 거부하여 태국세관에 수출물품이 도착하였으나, 수입통관을 못하고 보류되었다.

일곱 번째 사례는 다음과 같다.

한국 세관 발행 원산지증명서가 상공회의소 발행 원산지증명서와 달리 3번 Means of transport and route란에 도착항이 기재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태국 세관이 협정 적용을 거부하였다. 3번 란은 수출자가 아는 범위 내에서 기재하면 되므로 도착항이 기재되지 않아도 무방하나, 우리나라 상공회의소에서는 세관과는 달리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할 때 반드시 도착항을 기재하게 하고 있었다.

여덟 번째 사례는 다음과 같다.

한국의 수출자 B는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인쇄하는 과정에서 앞면 인쇄 후 뒷면에 작성방법(Overleaf notes)을 다시 인쇄하였으나, 이것이 거꾸로 인쇄되었다는 사유로 인도네시아 세관이 특혜 적용을 거부하였다.

아홉 번째 사례는 다음과 같다.

인도네시아로 전자부품 수출하는 G사는 한국 세관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인도네시아 세관에 제출하였으나, 인도네시아 세관은 제출된 원산지증명서 발급일(4월 17일)이 선적일(4월 21일)보다 빠르다는 이유로 원산지증명서를 인정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2) 국가간 FTA 관련 법률 및 해석 상이와 규정절차 관련 사례¹⁰⁾

열 번째 사례는 다음과 같다.

태국으로 금형을 수출하는 E사는 수출 당시 준비 미흡으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어려워 통관 이후 사후 협정 적용을 염두에 두고 수입자가 수입통관을 진행하였다. 이후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수입자가 태국에서 사후협정 적용 신청을 하려고 하였으나, 태국 세관으로부터 사후협정 적용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10) 관세청(2012, p.100), 관세청(2013, pp.26- 27), 관세청 (2015, p.63,p.65).

열한 번째 사례는 다음과 같다.

한국 P사는 2013년 1월부터 POLYPROPYLENE GLYCOL(HS 3907.20, 양허세율 0%)을 인도네시아로 수출하면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았으나, 인도네시아 세관은 한국산 제품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수입관세 5%를 불공정하게 부과하였다.

열두 번째 사례는 다음과 같다.

원산지증명서를 태국 방콕세관 측 요청에 따라 수출자가 한국 세관에서 3차례 정정 받은 후, 수입자가 이를 즉시 태국 세관에 제출하여 수입신고하였으나, 3차례 정정과정에서 최초 발급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자 태국 세관은 유효기간 경과를 사유로 수리를 거부하였다.

열세 번째 사례는 다음과 같다.

I사는 인도네시아로 섬유원단을 감는 기계를 수출한 후에, 수입자의 요청에 따라 관련 부품(모터)을 DHL로 발송하였는데 현지 세관에서 선하증권 원본을 요청하여 수입통관이 지연되어 수입자에게 불필요한 창고료¹¹⁾가 발생하였다.

열네 번째 사례는 다음과 같다.

베트남 수출가공지역 입주 기업은 하청생산에 의한 수출시 ① 원자재 수입시 ② 하청을 위한 원자재 반출시 ③ 하청생산 물품 반입시 ④ 최종 수출시 등 4번의 통관절차를 거친다. 또한 베트남 무역부 법령은 하청 생산물품은 완제품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수출가공지역 내의 본 공장 반입시 완성된 제품의 일부를 다시 해체한 후, 본 공장에서 다시 조립하는 이중 작업을 실시해야 함으로써 인건비가 가중되고, 최종 수출이 지연된다.

3) 품목분류번호의 불일치 사례¹²⁾

열다섯 번째 사례는 다음과 같다.

태국 세관은 한국 수출자 F사가 수출한 물품에 대해 오랫동안 품목분류번호가 HS 제 4811.90호된 원산지증명서를 받고서 수입 통관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이 제품은 관세율이 높은 HS 제5603.92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¹³⁾

열여섯 번째 사례는 다음과 같다.

베트남은 품목분류번호가 8단위로 되어 있고, 누락된 물품이 있어 베트남 일부

11) FCL(Full Container Load) 화물은 인도네시아 보세창고에 제품 도착 후 7주일간 창고료가 없으나, LCL(Less than Container Load) 화물은 인도네시아 보세창고에 제품 도착 당일부터 창고료 발생.

12) 관세청 (2012, p.93,p.96), 관세청 (2013, p.49,p.64), 관세청 (2015, p.59).

13) HS 제4811.90호(협정세율 0%)/ 태국요청 HS 제5603.92(협정세율 5%)

세관에서는 관세율표의 관세율 외에 유사품목의 관세율을 임의로 적용하는 경우가 있어, 이로 인해 관세 및 부대비용이 세관마다 다르다.

열일곱 번째 사례는 다음과 같다.

한국의 상공회의소에서 발행한 원산지증명서상 HS Code에 대해 태국에서 분류하는 HS Code와 다르다는 이유로 태국 세관은 원산지증명서의 HS Code를 정정하지 않을 경우 협정적용이 불가하다고 통보를 하였다.

열여덟 번째 사례는 다음과 같다.

한국 A사가 LED Spin Advertisement Media Equipment를 수출하여 수입자가 FTA 혜택을 받으면서 수입 통관하려는데 한국 수출자의 수출신고 (Form AK)상 품목분류번호 세번과 태국 세관 직원이 판단하는 품목분류번호 세번이 상이하여 수입신고가 곤란하였다.

열아홉 번째 사례는 다음과 같다.

HS협약(HS2012)은 개정되었으나, 한·아세안 FTA협정문은 HS2012버전으로 업데이트가 되지 않아, 한국 세관은 HS2007를 적용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였으나, 태국 세관은 HS2012버전으로 된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요청하였다.

4) 아세안 국가와 제도와 관습의 차이 사례¹⁴⁾

스무 번째 사례는 다음과 같다.

인도네시아는 WTO 관세평가협정적용, 사후심사 및 이의신청 등 납세자 권리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실제의 운영 과정에서는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등 불합리한 경우가 많다. 수입물품별 가격자료를 데이터베이스(DB)화하여 과세가격 결정시 활용하고 있으며, DB가격 대비 일정비율 이하인 경우(통상 5%) 관세추징 및 벌금 부과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스물한 번째 사례는 다음과 같다.

베트남에서는 세관이 특정업체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수출입업무를 중지하는 행정 제재를 하고 있다. 사전 통보 없이 세관 게시판에 게시와 동시에 수출입업무 중지제재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 업체는 그 이유도 모른 채 수출입업무를 갑자기 중단하여야 하는 사태가 발생한다. 나중에 확인하여 보면 관세납부와 관련하여 베트남 세관 측의 업무착오로 인한 제재인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가 1개월에 1회 정도 발생한다.

스물두 번째 사례는 다음과 같다.

인도네시아 세관은 위험관리기법을 활용하여 수입자 및 수입물품에 따라 차별 관리

14) 관세청 (2013, p.97, p.106, p.107, p.108).

(Priority/Green/Yellow/Red Channel)하고 있다. Yellow 또는 Red 업체로 지정되면 수입 통관과정에서 물품검사 및 서류심사 등의 이유로 통관이 지연¹⁵⁾되고 있다. 선정기준에 불합리한 점이 많으며 일단 Red Channel로 지정되면 Green Channel 이상으로 승격되는데 어려움이 많다.

스물세 번째 사례는 다음과 같다.

태국에 스테인리스 스틸 스트립을 수출하는 D사는 태국 수입자로부터 이 물품이 덤핑방지관세대상품목에 해당되어 수입하지 않고 반송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태국 당국에 이 물품이 덤핑방지관세대상품목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려고 해도 정확한 답변을 받기가 어려웠다.

IV. 대응방안

앞의 3장에서 우리나라 기업이 아세안국가로 수출한 물품이 수입통관단계에서 발생하는 분쟁 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제3장의 수입통관 분쟁 사례를 토대로 거래 상대방의 수입통관 분쟁 발생을 줄일 수 있는 효율적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원산지증명서의 형식적 요건에 주의

원산지증명서는 발급 방식에 따라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과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가 있다.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는 원산지국가의 관세당국 및 기타 권한 있는 기관이 당해 수출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하여 발급하는 형태로 한·싱가포르, 한·아세안, 한·인도, 한·중국, 한·베트남 협정에서 채택하고 있다. 반면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는 협정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수출자·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당해 수출물품의 원산지를 확인·작성한 후 서명하여 발행하는 형태로로서 선진국에서 주로 이용하고 있다.

원산지증명서의 기관발급방식을 선호하는 개도국은 수입통관단계에서 원산지증명서 형식 및 절차적 요건을 조사하고 있다. 반면에 자율발급 방식을 선호하고 있는 선진국은 형식적 위반보다는 실질적 원산지기준 위반에 초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한·아세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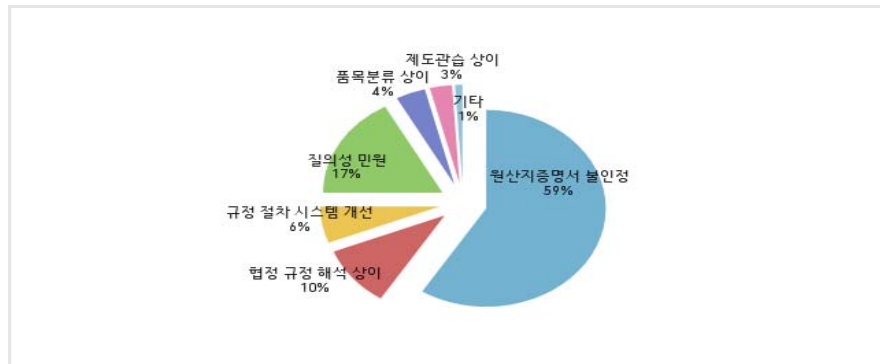
15) 통관시간 : Green Channel 은 2~3일, Red Channel은 7~10일 소요.

FTA에서는 발급시점의 원산지증명서의 형식적 요건이 중요하다.

〈그림 1〉은 한·아세안 FTA의 통관 분쟁 사례의 유형별 비중을 보여주고 있다. 한·아세안 FTA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으로 우리나라는 세관 및 상공회의소이고, 아세안 회원국은 부르나이 외교통상부, 캄보디아 상무부, 인도네시아 통상부, 라오스 상공회의소, 말레이시아 국제통상산업부, 미얀마 상무부, 필리핀 세관, 싱가포르 세관, 태국 상무부, 베트남 산업무역부이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관세청이 집계한 아세안국 거래상대방의 수입통관 분쟁 유형별 비중을 보면 원산지증명서의 형식적 요건 불비로 인한 특혜적용 배제 또는 통관 지체를 경험했던 사례가 59%로 가장 높다. 특히 〈사례 1〉에서 〈사례 9〉에서 본비와 같이 아세안 국가는 까다로운 원산지증명서 심사로 사소한 형식적 불비임에도 불구하고 특혜 적용을 배제하는 경우가 많다.

〈그림 1〉 한·아세안 FTA 수입통관 분쟁 유형별 비중



자료 : 관세청 통관애로 접수 통계(2014년~2016년) 기초로 저자 작성

1) 원산지증명서 작성방법¹⁶⁾

「한·아세안 FTA협정 부속서3 부록1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한·아세안 FTA 원산지 증명서는 인쇄한 형태로, A4 용지에 규정화된 원산지증명서 양식(이하 FORM AK라고 함)을 사용하여 영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이때 수출국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당국은 수기 또는 전자적으로 서명하거나 인장을 날인하여야 한다. 그러나 세 번째와 네 번째 사례와 같이 일부 아세안 국가에서 우리나라 기관이 전자적으로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를 인정하

16)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

지 않다가, 2016년 상품협정 3차 개정 의정서가 시행된 시점으로부터 이것이 인정되었다.

원산지증명서는 「한·아세안 FTA 원산지 규정을 위한 원산지 증명 운영절차 제5조 2항」에 따라 1부의 원본과 2부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중간 경우 당사국 발급 기관이 물품이 그 영역을 통과하는 동안 신청에 의거 연결원산지증명서(Back-to-Back C/O)¹⁷⁾를 발급할 수 있다. FORM AK는 발급장소 또는 발급 사무소가 개별적으로 부여한 참조번호(Reference No)를 기재한다. FORM AK 제1란에는 수출자의 성명(상호), 주소 및 수출국, 제2란에는 수입자의 성명(상호), 주소 및 수입국을 기재한다. 이에 따라 FTA 협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거래당사자¹⁸⁾를 명확히 해야 한다. 제3란에는 운송 선박(항공기)의 출항일, 선박명(편명), 양륙항 등 운송수단 및 운송경로를 알고 있는 범위에서 상세히 기재한다. 제4란에는 수입국의 세관공무원이 해당 물품의 협정관세 적용여부를 “√” 표시한 후 서명한다. 제5란에는 물품을 같은 종류별로 구분하여 물품의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제6란에는 물품 표시 및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제7란에는 포장개수, 포장형태, 품명, 수량 및 품목분류번호 등을 기재한다. 품목분류번호는 수입국의 HS협약에 따른 품목분류번호를 적는다. 제8란에는 수출자(제조사 및 생산자 포함)가 해당 물품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을 기재한다.

제9란에는 해당 물품의 총중량과 역내가치포함비율 기준이 사용된 경우로 한정하여 FOB가격을 기재하여야 하는데, 반드시 송장금액과 일치하여야 한다. 제10란에는 송장의 일련번호 및 발급일자를 기재한다. 제11란에는 수출자(제조사 및 생산자 포함)가 수출국, 수입국, 신청일자 및 장소를 기재한 후 서명한다. 제12란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담당자가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일자 및 발급장소를 적고, 서명한 후 발급기관의 인장을 날인한다. 제13란은 수출국이 아닌 제3국에서 송장이 발급된 경우 기재하는데 “제3국 송장(Third country invoicing)”란에 “√” 표시하고, 반드시 제7란에 송장을 발행한 회사의 상호 및 국가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수출국이 아닌 제3국에서의 전시를 위해 수출국에서 제3국으로 송부된 물품으로서 제3국에서 전시 도중 또는 전시 후에 수입국으로의 수입을 위해 판매된 경우는 “전시(Exhibition)”란에 “√” 표시한다. 끝으로 연결원산지증명서는 “연결원산지증명서(Back-to-Back CO)”란에 “√” 표시한다.

17) 최초 수출국이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경유하는 국가가 발행되는 원산지증명서를 말한다.

18) 수출자는 수출국에 소재하면서 그 상품을 수출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으로 원산지증명서 발급 또는 발급신청의 주체로서 관련 자료의 보관의무를 부담하고, 수입자는 수입국에 거주하면서 상품 수입에 관한 기록유지의 의무가 있는 자연인 또는 법인이다.

2) 원산지증명서 운영 절차 개정

한·ASEAN FTA 원산지증명서 운영절차가 2014년 1월 개정되면서 그 이전에 발생되었던 원산지증명서 분쟁 발생은 상당수 감소되었다. 개정 규정에서는 원산지증명서상 제조자명을 삭제하고,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여 특혜관세 적용 가능성을 높였다. 또한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기를 수출 시 또는 수출 직후("at the time of exportation or soon thereafter")에서 선적 전, 선적 시 또는 선적 직후(선적일로부터 3근무일 이내)("prior to or at the time of shipment or soon thereafter but should not be more than three(3) working days from the declared shipment date")로 명확히 하여 그동안 인도네시아가 선적 전 발행 원산지증명서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던 문제를 해소하였다. 원산지증명서가 선적일로부터 3근무일이 경과되어 발급되었을 경우에는 소급발급("ISSUED RETROACTIVELY") 문구를 기재하여 선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원산지증명서가 발급 될 수 있으나, 일부 국가에서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수출자는 소급발급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한다.

그러나 이러한 개정에도 불구하고 아세안 국가가 원산지증명서 형식상 요건을 중시하는 것은 여전히 우리나라 수출자와 아세안 국가의 수입자에게는 애로사항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인도네시아와 태국으로 수출시 더욱 유의하여야 한다. 협정 개정으로 우리나라 기업이 인도네시아로 수출시 전자발급 원산지증명서를 인정받고 있으나 이것을 인쇄할 때에는 반드시 A4용지에 칼라로 인쇄하여야 하며, 이면 기재사항을 원산지증명서 원본 이면에 반드시 프린트해야 한다.¹⁹⁾ 특히 인도네시아 세관은 원산지증명서 이면 기재사항이 뒷면에 인쇄되지 않으면 원산지증명서를 불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관련 FTA 협정문에 Form AK 양식의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양식에는 Form AK의 이면기재사항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최근에 태국 세관에서 원산지증명서 형식적인 요건 미비로 인한 통관보류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태국 세관에서는 원산지증명서 항목마다 꼼꼼히 발급기준에 맞게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특히 Form AK 1번란 수출자 주소가 송장의 주소와 일치하는지 여부, 3번란의 선명/편명 기재, 6번란 포장표시 및 번호 기재 또는 선하증권과의 기재내용과 일치여부, 7번란 포장수량 및 종류가 송장 내용과의 일치여부, 8번란 원산지결정기준 표기방식의 정확한 기재여부, 9번란 총중량, FOB 가격이 수입 시 제출된 송장, 포장명세서 및 B/L과의 일치여부, 10번란의 송장 일자가 송장에 기재된 일자와의 일치 여부,

19) 전자 발급 원산지증명서를 pdf 파일의 형태로 제출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고, 반드시 종이에 인쇄하여 제출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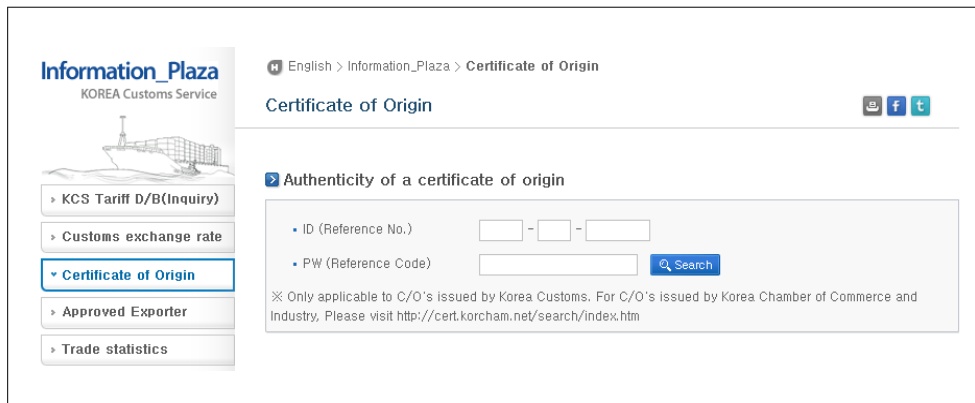
11번란 장소, 일자, 서명(수출자) 기재, 제3국 송장 표기, FOB 가격란에 CIF 가격을 기재하는 오류가 있는지 여부 또는 송장 가격과의 일치 여부 그리고 소급발급문구가 기재되었는지 확인한다.

3) 원산지증명서 확인 사이트 조회

세 번째와 네 번째 사례처럼 아세안 국가는 원산지증명서의 진정성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원산지증명서를 불인정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우리나라 세관 및 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한 원산지증명서의 진위여부는 수출자도 인터넷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다. 원산지증명서가 정정이 되면 최초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의 Reference Code가 바뀌므로 수입국 세관에서 정정된 원산지증명서 번호로 조회를 하였는데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 인터넷사이트 상에는 원산지증명서 번호가 정정이 되지 않았다면 수입국 세관은 제출된 원산지증명서를 진정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수출자는 세관과 상공회의소의 원산지증명서 확인 사이트(그림 2와 그림 3 참조)를 이용하여 정정된 원산지증명서가 조회될 수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세관 발행 원산지증명서 확인을 위하여 관세청 영문홈페이지(<http://english.customs.go.kr>)의 Certificate of origin에 접속하고, 상공회의소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는 대한상공회의소 영문홈페이지(<http://cert.korcham.net>)의 Reference System에 접속하여 조회한다.

〈그림 2〉 세관 발행 원산지증명서 확인 사이트



자료 : www.customs.go.kr

〈그림 3〉 상공회의소 발행 원산지증명서 확인 사이트

**Authenticity of a document issued/certified by
Korea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KCCI)**
Republic of Korea

Year of Issuance/Certification ▼

Reference No

Reference Code

Check it out

자료: KCCI Trade Certification Service Center

2. 국가간 FTA 관련 법률 상이 문제 해소

국가 간 FTA 관련 법률이 상이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주로 FTA 사후적용문제와 상호 대응세율제도와 관련된다. 한·아세안 FTA 협정은 원산지증명서를 소급 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FTA 사후적용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없어 아세안 각국이 자국법 규정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특히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등의 국가는 자국법에서 사후적용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궁극적으로 한·아세안 FTA 협정문에 사후적용이 가능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아세안 각 국가별로 적용요건을 단순화하고 통일할 필요가 있다. <표 5>는 국가별 한·아세안 FTA 사후적용 요건을 열거하고 있다.

상호대응세율제도²⁰⁾은 FTA 체결상대국이 자국의 산업보호를 위해 관세철폐를 양허하지 않고 높은 관세율을 유지하는 품목(민감품목)을 상대국에 수출할 경우, 수입국도 FTA 협정에서 관세를 철폐하기로 약속한 품목이더라도 상호주의에 따라 관세철폐를 하지 않거나, 상대국 관세율 수준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다만 해당품목에 대한 수출국의 실행관세율이 10% 이하인 경우에는 수입국은 수출국과 동일한 관세율을 적용한다. 지금까지는 구체적 양허표가 없이 각 국가별로 매년 세율을 설정해 상대국에 통보하는 방식이어서 수출자가 관세를 인하 일정을 예측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2024년까지 국가별, 품목별 및 연도별 양허일정표²¹⁾가 작성완료 되면 불확실성을 낮출 수 있고 특혜세율 착오 등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4항.

21) 산업통상자원부 FTA포털(www.ftahub.go.kr)에서 확인할 수 있음.

〈표 5〉 국가별 한·아세안 FTA 사후적용 요건²²⁾

국가	사후적용 기한	요건
한국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	요구 조건 없음
브루나이	수입 후 1년 이내	수입시 관세당국에 특혜관세 사후신청 의사 통지
캄보디아	소급 기간 없음 (수입 통관시 원산지증명서 제출)	
인도네시아	소급 기간 없음 (수입 통관시 원산지증명서 제출)	
라오스	수입 후 1년 이내	- 수입시 특혜관세 소급적용 신청 의사 통지 - 수입자는 지급해야 하는 관세와 세금에 대해 보증금 120%를 납부
말레이시아	수입 후 1년 이내	수입시 관세당국에 특혜관세 소급적용 신청에 대한 의사 통지
미얀마	원산지증명서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	요구 조건 없음
필리핀	수입 후 6개월 이내	- 수입시 관세당국에 특혜관세 소급적용 신청에 대한 의사 통지 - MFN 세율과 AKFTA 협정세율 간의 차이에 상응하는 사후보증서(post guarantee bond)를 제시 * 수입 후 6개월 내에 원산지증명서가 제시되면 이 bond는 취소, 제시하지 못하면 보증서 몰수
싱가포르	수입 후 1년 이내	- 수입허가를 신청할 때, 특혜관세 소급적용 신청에 대한 의사를 표명 - 특혜관세 사후신청 및 적용 이후에 수입자에게 관세 환불
태국	수입 후 1년 이내	수입시 관세당국에 특혜관세 사후신청 의사를 통지
베트남	원산지증명서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	수입시 소급적용신청 의사를 서면으로 관세당국으로 제출

자료 : 관세청(2015), 알려주고 싶은 통관애로해소사례 100.

3. 품목분류번호 상이 예방 대책

HS 6단위는 전 세계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각국의 품목분류 해석 관행이 달라서 동일한 품목이더라도 품목분류번호가 상이하여 특혜관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원산지증명서가 수출신고필증²³⁾을 토대로 작성되므로, 원산

22) 관세청 (2015, p.64)

23) 수출신고필증은 세관이 수출자에게 물품이 수출됨을 증명하는 수출신고서류이며, 수출자는 수출신고필증을

지증명서는 수출신고필증의 기재사항과 일치하여야 한다. 그러나 협정의 Form AK 양식에 따라 Form AK 제7란의 품목분류번호(HS Code)는 수입국의 HS에 따른 품목분류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앞의 열일곱 번째와 열여덟 번째 사례18와 같이 동일물품이라도 우리나라에서 승인 받은 수출신고필증의 품목분류번호와 수입국인 아세안국의 품목분류번호가 다를 수 있다.

따라서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에 우리나라와 수입국간 품목분류번호가 달리 운영되고 있다면, 수입신고필증 등 수입국의 HS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 서류를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제출하면 수입국의 HS Code에 맞추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²⁴⁾

또한 수입국의 품목분류번호가 우리나라와 다를 것으로 예상되면, 수출자는 사전에 수입자와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필요하지 않는 샘플 거래로 상대국에서 수입통관하여 품목분류번호를 확인한 후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신청하는 것이 좋다.

FTA가 심화 될수록 수입관세율과 원산지 결정기준의 기본이 되는 품목분류번호의 중요성이 증가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 또는 해외 현지법인과 외국세관 당국사이에 통관과정 중에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품목분류번호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관세청은 2011년 6월 HS국제분쟁신고센터를 공식적으로 출범시켰다.

WCO는 5년마다 6단위의 HS code를 개정한다. 이 개정은 HS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국가에 HS code의 광범위한 조정이 필요하게 된다. 원산지규정과 관세감면 계획(duty reduction schemas)이 HS 시스템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원산지와 관세감면 규정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관세당국은 수출입자에게 예상 관세율을 통지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원산지 규정을 정확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과거의 역사를 보면, 관세 제도를 점검하여 개정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국가마다 차이가 나고, FTA 적용 가능성에 대한 새로운 HS code의 영향, 원산지 규정의 적용 및 적용 가능 관세율에 대한 추가적인 출판물이 항상 개정된 HS code와 궤를 같이 하는 것은 아니라는 문제점이 있다(von de Heetkamp and Tusveld, 2011, p.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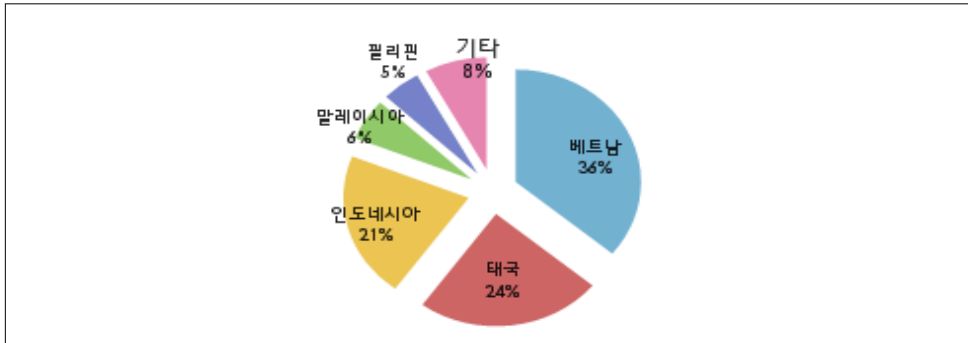
4. 상대국의 통관제도 연구 및 유대 강화

아세안국 중에서 베트남, 태국 및 인도네시아의 수입통관 분쟁 발생 비중이 81%를 차지하고 있으며, 원산지증명서 발급건수도 3개국에 가장 많다. 따라서 이들 국가의 통관

제시하여야만 본선선적 또는 항공기 적재가 가능하다.
24) 품목분류상이시처리지침(FTA집행기획담당관-760,2014.4.1.).

제도와 관습에 대한 심층적 연구와 우리나라 정부당국이 수입통관 분쟁을 감소시키기 위한 외교적 노력과 상대국 세관과의 긴밀한 접촉으로 상호 소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림 4>는 아세안 국가별 수입통관 분쟁 발생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4〉 아세안 각국별 수입통관 분쟁 발생 비중



자료: 관세청 통관예로 접수 통계(2014년~2016년) 기초로 저자 작성

5. 수출자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컨설팅 강화

수출자가 FTA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것은 FTA에 대한 정보 부족에 그 원인이 있는 경우도 있고, FTA 원산지관리의 어려움에 기인하기도 한다. 한·아세안 FTA에서는 기관 발급 원산지증명서가 제시되지만 수입국 세관 당국이 사후에 원산지 검증을 하므로 원산지 관련 자료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또한 원산지증명서 발급과 원산지 검증에 대비하여 구입하는 원자재의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 업체의 FTA 활용을 돕기 위하여 한국무역협회와 상공회의소에서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연수 사업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영세한 중소기업은 FTA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어렵다. 따라서 우리나라 수출지원기관의 영세한 중소기업에 대한 FTA 컨설팅을 강화하고, 통관업무를 담당하는 관세사가 원산지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되면 FTA 활용을 크게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²⁵⁾

25) 현대자동차는 협력회사 평가시 협력회사가 원산지관리를 아웃소싱하면 가점을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V. 결 론

2007년 한·아세안 FTA 발효 후 10년 동안 우리나라의 아세안국가에 대한 무역규모는 눈에 띄게 성장하였다. 발효 전 2006년 618억 달러였던 아세안의 교역액이 발효 5년 차에 교역 사상 첫 1,000억 달러를 돌파하며 1,249억 달러를 기록하였고, 2016년에는 1,188억 달러로 발효 전보다 2배 증가하였다. 수출금액도 발효 전 321억 달러에서 2016년 745억 달러로 2배를 웃돌게 증가하였고, 수입규모도 확대되어 2016년 443억 달러로 1.5배 증가하여 발효 전 우리나라의 5번째의 교역시장에서 2016년에 제2의 교역시장으로 도약하였다.

이렇게 아세안은 포스트 차이나로 급부상하며 생산거점이자, 신흥소비 시장으로 우리나라의 견실한 경제 동반자로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FTA의 발효 경과기간과 교역량에 비하면 FTA의 수출활용률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또한 아세안으로 수출하는 우리나라 기업의 거래상대방이 협정 적용에 어려움을 겪는 수입통관 분쟁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수출자는 기관발급을 선호하는 개도국의 특징인 원산지증명서의 형식 심사와 아세안 각국마다 협정규정 해석 상이 및 수입통관절차의 복잡성 및 투명성 부족, 품목분류번호 이견, 그리고 문화와 관습이 달라서 FTA 수출활용이 저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입국 세관의 까다로운 원산지증명서 심사로 인한 협정 불인정이 전체 수입통관 분쟁의 59%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송장과 내용이 일치하고, Form AK 서식에 맞게, 영어로 정확히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고, 상대국의 제도와 규정 처리 절차를 사전에 이해하며, 우리나라와 수입국 간 품목분류에 이견이 예상되는 물품은 사전에 수입자와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필요하지 않는 샘플 거래로 수입통관한 후 품목분류번호를 확인하여 품목분류에 이견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할 필요하다. 또한 아세안 국가로 수출하기 전에 그 나라의 통관제도와 관습도 잘 이해해야 한다. 또한 영세 중소기업이 FTA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원산지관리하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관세사 또는 관세사 법인이 이 업무를 아웃소싱 받아서 처리하는 것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FTA 사후적용문제 등 FTA 협정 개정이 필요한 문제는 정부의 추가 자유화 협상 시 반영되어야 하고, 수입통관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국가와 수입통관 분쟁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정부 당국의 외교적 노력과 아세안 국가 세관 당국과의 유대관계 강화를 모색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관세청에 접수된 수입통관분쟁 사례를 토대로 분석

하여 문제점 및 대응방안을 도출하였으나 향후 아세안 수출입 기업에 대한 애로 사항 설문조사와 보다 상세한 정보를 수집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 관세청(2012), “해외 FTA 활용애로 해결 사례집”.
- 관세청(2013), “해외통관애로 · 분쟁사례집”.
- 관세청(2014), “해외통관애로 제로(Zero) 길라잡이”.
- 관세청(2015), “꼭 알려주고 싶은 FTA 통관애로 해소 사례”.
- 김정덕 · 광동철(2017), “한 · 아세안 FTA 10년의 발자취,” 「한국무역협회 TRADE FOCUS」, 제24호, pp.1-39.
- 남풍우 · 최준호(2007), “한 · 아세안 FTA의 원산지결정기준과 원산지증명서 작성,” 「통상정보연구」, 제9권 제2호, pp.183-203.
- 도연정 · 배정한(2012), “수출기업의 대아세안 FTA 활용 전략,” 「통상정보연구」, 제14권 제4호 pp.459-490.
- 박세운 · 한기문 · 김성룡(2017), “Incoterms 2010 공식번역 및 해설서”, 대한상공회의소.
- 정인교(2009), “우리 기업의 FTA 활용도 조사 및 활용도 제고 방안,” 「국제지역연구」, 제13권 제3호, pp.367-390.
- 정인교 · 조정란 · 권경덕 · 김도훈 · 오동윤(2010), “FTA 활용활성화 방안”, 인하대 산학협력단.
- 정재승 · 정윤세(2013), “무역기업의 FTA 활용 애로사항 및 지원방안에 대한 연구,” 「통상정보연구」, 제15권 제4호, pp.171-192.
- 조찬혁 · 남수정(2017), “한 · 아세안 FTA 원산지기준과 교역규모,” 「한국관세학회 학술대회논문집」, pp.221-235.
- 한상현(2016), “한 · 아세안 FTA하에서 소급발급 원산지증명서의 유효성에 관한 사례분석,” 「관세학회지」, 제17권 제2호, pp.129-147.
- Abreu, M.D. (2013), “Preferential Rules of Origin in Regional Trade Agreement,” World Trade Organization Staff Working Paper ERSD-2013-05.
- Bureau, J., Chakir, R. and Gallezot, J. (2007), The Utilisation of Trade Preference for Developing Countries in the Agri-food Sector, Journal of Agricultural

- Economics, Vol. 58 No.2, pp.175-198.
- Cadot, O., Estavadaeoral, A., Suwa-Eisenmann, A. and Tumurchudur, B. (2002),
Assessing the Effect of NAFTA's Rules of Origin, Revised Version June 2002.
- Francois, J., Hoekman, B. and Manchin, M. (2006), "Preference Erosion and
Multilateral Trade Liberalization," World Bank Economic Review, Vol.20 No.2.,
pp.197-216.
- Hayakawa, K., Kim, H. and Lee, H. (2014), "Determinants on Utilization of the
Korea-ASEAN Free Trade Agreement: Margin Effect, Scale Effect, and ROO
Effect," World Trade Review, Vol.13 No. 3, pp. 499-515.
- Herin, J. (1986), "Rules of Origin and Difference between Tariff Levels in EFTA and
the EC," EFTA Occasional Paper 13.
- Inama, S. (2009), Rules of Origin in International Trad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eck, A. and Lendle, A. (2012), "New Evidence on Preference Utilization," Staff
Working Paper ERSD-2012-12, World Trade Organization.
- Manchin, M. (2006), "Preference Utilisation and Tariff Reduction in EU Imports from
ACP Countries," The World Economy, Vol.29 No.9, pp.1243-1266.
- van de Heetkamp, A. and Tusveld, R. (2011), Origin Management, London; Springer.

Case Studies on Import Clearance Disputes Facing Korean Companies' Trade Counterparts under Korea · ASEAN FTA and Countermeasures

Eun-Ju Bae
Sae-Woon Park
Hee-Ho Kim

Abstract

Since entering into force on June 1st, 2007, the Korea · ASEAN FTA has had great strategic importance as it represents a massive export market for Korea. For more than 10 years since its implementation, the trade in both goods and services have greatly increased, and ASEAN has become the second largest export market for Korea. However, Korea's FTA utilization rate for exports is approximately 46%, which is far lower than the average rate of 72% for all FTAs, despite several revisions.

In this study, we investigate the problems causing this low rate of FTA utilization for export by analyzing import clearance disputes faced by the counterpart. Our recommended countermeasures for such disputes are :

Since form requirements for C/O (certificate of origin) are important considerations for ASEAN countries, C/O needs to be written accurately. Understanding of the administrative system and regulative procedures of ASEAN countries is also necessary. Accurate HS code of importing countries must be obtained. Korean government authorities should make diplomatic effort to ease the import clearance procedures in counterpart countries and contact customs offices to facilitate communication.

〈Key words〉 Korea · ASEAN FTA, Certificate of Origin, FTA Utilization, Import Clearance Dispute